

**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[ ] 영문운전면허증 [ ]·국제운전면허증 발급 [ ]**  
**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[ ] 운전면허증갱신발급(적성검사)연기 [ ]**

**신청서**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확인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(한글)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)	
	주민등록번호	운전면허번호		
	전화번호	전자우편		
	주소			
갱신·적성 검사 연기	신청 사유	해외 체류 [ ]      재해 또는 재난 [ ]      질병 또는 부상 [ ] 구속 [ ]      군복무 [ ]      기타 [ ]		
	연기 기간	시작일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예상종료일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	
재발급	신청 사유	분실 [ ]      훼손·오손 [ ]      기타 [ ]		
	분실 일자			
영문 [ ] 국제 [ ] 운전면허증 발급	성명	성		
	(영문) 이름			
발급	발급사유(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시 작성합니다)			
신청차종	[ ]자동 [ ]수동			

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1항, 제80조제1항, 제81조제1항, 제83조제1항,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
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 
 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**시·도경찰청장·○○경찰서장 (도로교통공단) 귀하**

**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**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(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**유의사항**

1. 운전면허증 갱신(적성검사)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2. 운전면허증 갱신(적성검사)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(적성검사)을 받으셔야 합니다.

영수필증 첨부란		담당	부장	장장
신청사무	신청인 제출서류		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	수수료
제2종 운전면허 갱신	※ 신청인 제 출서류 중 신분증명서 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.  ※ 대리 신청 하는 경우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	1. 신분증명서 2.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(3.5cm×4.5cm) 1장	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	「도로교통 법」 제139 조에 따라 도로교통 공단이 경 찰청장의 승인을 받 아 결정· 공고하는 금액
운전면허증 재발급		신분증명서		
운전면허증 갱신(적성검사) 연기		1. 신분증명서(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1.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해외 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병적증명서(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)	
영문운전면허증 발급		1. 신분증명서 2.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(3.5cm×4.5cm) 1장	여권정보(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국제운전면허증 발급		1. 신분증명서 2.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(3.5cm×4.5cm) 1장	여권정보(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
※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1항 단서, 제80조제1항 단서, 제81조제1항 단서, 제83조제1항 단서, 제85조제1항 단서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적성검사(갱신)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78조제4항, 제80조제3항 및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(기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해야 합니다.